

2025 이패스 객관식 사회보험법 정오표(2025.03.06. 기준)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24	14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① 국가보훈처장,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.	14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① 국가보훈부장관 ,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.
99	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③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.	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③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되고,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.
139	04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⑤ 임의계속가입자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그 다음날 가입자격이 상실된다.	04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⑤ 임의계속가입자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그 다음날 가입자격이 상실된다.
205 376	12 사업규모별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 정답 ②	모두 정답 처리
322	10 정답 ④ ③ 이종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(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) 제1항, 건강보험법 제53조(급여의 제한) 제1항 제4호, 근로기준법 제87조(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) 등이 있다.	10 정답 ④ ③ 이종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(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) 제1항, 건강보험법 제53조(급여의 제한) 제1항 제4호, 근로기준법 제87조(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) 등이 있다.
323	14 정답 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9조 【위원회의 위원 등】 ① 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이란 법무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.> ⑤ (동법 제21조)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,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	14 정답 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9조 【위원회의 위원 등】 ① 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이란 법무부장관, 국가보훈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. ⑤ (동법 제21조)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.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353	<p>04 정답 ③</p> <p>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나, 예외적으로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5세에 달한 때까지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</p> <p>나.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</p> <p>다. 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그리고 광업·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도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없다(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). 임의계속 가입의 자격은 임의계속가입신청서가 수리된 날에 취득하고,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(국민연금법 제13조 제2항). 임의계속가입자는 ① 사망한 때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③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④ 3개월 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때에는 그 다음 날 당연히 가입자격이 상실된다(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·국민연금법시행령 제21조).</p>	<p>04 정답 ③</p> <p>법 제13조(임의계속가입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.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.</p> <p>1.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</p> <p>나.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</p> <p>다.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</p> <p>2.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(이하 “특수직종근로자”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</p> <p>가.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</p> <p>나.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을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</p> <p>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.</p> <p>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p>1. 사망한 때</p> <p>2.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</p> <p>3.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</p> <p>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</p> <p>령 제21조(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) 법 제12조제3항제5호,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</p>